

학 칙 시 행 세 칙

제정 1997. 03. 01	개정 2000. 03. 01
개정 2000. 08. 01	개정 2001. 08. 01
개정 2002. 08. 01	개정 2003. 03. 01
개정 2004. 03. 01	개정 2005. 09. 01
개정 2006. 08. 01	개정 2006. 12. 06
개정 2007. 03. 01	개정 2008. 03. 01
개정 2008. 04. 01	개정 2009. 03. 01
개정 2009. 06. 01	개정 2009. 10. 20
개정 2010. 02. 18	개정 2012. 05. 01
개정 2013. 02. 28	개정 2014. 03. 31
개정 2014. 06. 16	개정 2014. 07. 23
개정 2015. 04. 07	개정 2015. 08. 31
개정 2015. 12. 07	개정 2016. 02. 04
개정 2016. 12. 29	개정 2017. 02. 09
개정 2017. 05. 01	개정 2017. 06. 26
개정 2017. 08. 28	개정 2017. 12. 26
개정 2018. 02. 07	개정 2018. 02. 28
개정 2019. 02. 11	개정 2019. 04. 29
개정 2019. 06. 24	개정 2019. 08. 26

제1장 총 칙

제1조 본 학칙 시행세칙(이하‘본 세칙’)은 학칙 제59조에 근거하여 경동대학교(이하‘본 대학교’) 학칙에 규정된 제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1)

제2장 등 록

제2조 (학기등록) ① 학칙 제49조의 납입금 납부 의무에 따라 매학기 지정하는 기간 및 납입 장소에서 소정의 납입금을 납입함으로써 재학생이 되며 학점이수의 자격을 얻는다. (개정 2015. 8. 31)

② 납입금 징수 기일은 학기 개시 10일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 3. 1)

③ 부득이한 가정 사정으로 학생이 그 보호자 및 지도교수 연서로 납입금 납부 연기(별지 서식 제3호)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납입금의 3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없이 그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④ 8학기 이후 학점미달로 졸업을 못할 경우에는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에 등록하여야 하며, 개설되지 않는 학기는 1학기 간 휴학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3. 3. 1)

제3조 (신입생 등록) 입학을 허가받은 사람(재입학·편입학 포함)는 학칙 제13조에 따라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

1. 사진(명함판) 지정하는 매수

2. 서약서(별지 서식 제4호) 1부
3. 학생 생활 및 진로지도카드 (별지 서식 제5호) 2부
4. 기타 별도로 지정하는 서류

제4조 (납입금 면제 및 반환) ① 학칙 제50조에 따라 학생에 대한 납입금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②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호·제4호 해당 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및 입학금의 반액을 면제하되 직전 학기의 평균성적이 평점 1.7 미만이거나 학칙 제48조에 의한 징계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13. 3. 1)

③ 이미 납부한 수업료와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1호) 제6조 각 호의 경우 등록금 반환 청구 (별지 서식 제6호)가 있을 때는 법령에 의하여 반환한다. 등록금반환 청구기간은 등록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3. 1)

④ 전항에 불구하고 징계에 의한 제적 학생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휴학 학생인 경우 휴학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3. 3. 1)

제5조 (계절학기 등록 및 학점은행제에 의한 등록) 계절학기 및 시간제등록의 등록금(수강료)은 학점 단위로 징수하며 학점 당 수강료는 별도로 정한다.

제6조 (휴·복학생·미졸업 학생의 등록) ① 미등록 상태에서의 휴학은 수업일수 1/3선 이전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 개정 2013. 3. 1, 개정 2015. 8. 31)

②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고 재학 중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의 등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일반휴학생

가. 당해학기 등록 이후부터 수업일수 1/3선 당해 일까지의 기간에 휴학하는 학생은 기 납부한 등록금은 유효하다.

나. 총 수업일수 1/3선 다음날부터 휴학하는 학생은 기 납부한 등록금은 무효이며 복학 당시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군 입대 휴학생

가. 등록 후 수업일수 3/4선 당해 일까지의 기간에 휴학을 하는 학생은 복학 할 경우 기 납부한 등록금은 유효하며 복학 당시 증액분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나. 등록 후 수업일수 3/4선 다음날부터 휴학을 하는 학생이 휴학 당시 학기의 성적 인정을 받지 못하여 해당학기를 다시 이수코자 할 때는 납입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복학 학생과 징계로 인하여 정학 중에 있는 학생도 제2조 ①항을 적용한다.

④ 8학기 이후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수학을 계속해야 할 경우의 수강등록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위 제 4조 ①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3. 3. 1)

가. 학점수가 1~3학점인 경우 또는 기타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등록금의 6분의 1 납부 (개정 2013. 3. 1)

나. 학점수가 4~6학점인 경우 : 등록금의 3분의 1 납부 (개정 2013. 3. 1)

다. 학점수가 7~9학점인 경우 : 등록금의 2분의 1 납부 (개정 2013. 3. 1)

라. 학점수가 10학점 이상인 경우 : 등록금의 전액 납부 (개정 2013. 3. 1)

제7조 (체납 징벌) 본 세칙 제2조 ①항을 위반하는 학생은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제 3 장 수강 신청

제8조 (수강신청 기간 및 방법) ① 학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다음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학칙 제27조에 의거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한다. (개정 2013. 3. 1)

② 학칙 제23조 ①항의 복학 학생이나 징계 중인 학생도 수강신청 기간 내에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생의 경우, 수강신청기간 이후에 휴학사유가 만료될 때에는 매 학기 개학일로부터 1주 이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3. 1)

③ 학칙 제23조 ⑤항의 군제대 학생의 경우 전향에 불구하고 수업일수 1/4 이내에 별도의 수강신청 기간을 지정하되, 군 제대 복학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수강신청 이전의 수업일은 결석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 3. 1)

제9조 (수강신청 학점의 범위 및 제한) ① 학칙 제27조에 의거 매학기당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신청 범위 : 최하 15학점 ~ 최고 19학점(중등특수교육,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최고 20학점) (개정 2013. 3. 1)

2. 초과 신청 범위 : 일반학생은 최하 15학점 ~ 최고 22학점(중등특수교육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최고 23학점), 학군사관후보생(ROTC) 및 기초 학력 부진자는 최하 15학점 ~ 최고 21학점(중등특수교육과와 간호학과, 치위생학과는 최고 22학점)으로 하며, 선정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단, 사회봉사활동과 자기주도 프로젝트 및 Counselling Study는 최고 신청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 개정 2010. 2. 18, 개정 2013. 3. 1, 개정 2014. 3. 31, 개정 2016. 12. 29, 개정 2019. 4. 29)

3. 초과 신청 자격 : 전(前)학기 평점 4.00이상인 학생, 타 대학 및 사이버강좌 학점교류 학생, 특별시험 학점 취득 학생, 연계자격특강 학점 인정 학생 (개정 2013. 3. 1)

② 수강신청 최소 범위인 15학점 미만으로 신청한 경우 해당 학기 전 과목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초과 신청 자격이 없는 학생이 기본 신청 최고범위(19학점)를 벗어나 신청한 경우 해당학기 선택 과목 중 자유(일반)선택, 교양선택, 전공선택 과목 순서로 수강신청 시간이 늦은 과목부터 우선하여 초과 취득 학점만큼 임의 삭제한다. (개정 2017. 2. 9)

④ 위 항에 불구하고 졸업에 소요되는 이수학점이 충분하다 인정되는 경우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에 따라 7차 학기는 수강신청 최소 범위를 6학점으로, 8차 학기는 3학점으로 할 수 있으며, 학점교류 및 기타 대체인정에 의한 이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개정 2017. 8. 28)

제10조 (수강 및 이수 불인정) 다음의 교과목은 수강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지정 기간 내 수강신청 또는 정정을 하지 아니한 교과목
2. 동일 교과목을 중복 수강 신청한 경우
3. 강의 시간표상 수업시간이 겹치는 경우 중복되는 모든 교과목
4. 이수 대상을 특별히 지정한 교과목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5. (삭제 2017. 8. 28)
6. 선수를 지정하는 교과목의 경우 선수 순위를 어긴 교과목 (개정 2017. 2. 9)
7. 이수 학년·학기를 특별히 지정한 교과목(수강 권장 학년·학기는 관계없음)
8. 기타 총장의 승인을 얻은 전공별 수강 내규를 위반한 교과목

제11조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 ①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간표의 변경, 폐강 등의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학과(부)장의 지도를 받은 이수 포기 학생은 수강신청 정정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② 학기 개설 후 수강과목의 철회(별지 서식 제9호)는 수업일수 1/4일 이전에만 할 수 있고 대체 수강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철회로 인하여 수강신청 학점 최소범위 이하이거나 과목 폐강 수강인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철회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7. 2. 9, 개정 2017. 8. 28)

제12조 (수강신청의 순서) 수강 신청 순서는 교필, 교선, 전필, 전선, 자유선택 과목 순으로 한다.

제13조 (선수 과목 신청) 선수를 요하는 교과목(선수 필요과목)의 수강신청은 반드시 선수교과를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교과교수가 이수능력을 인정하는 학생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7. 2. 9)

- ① (삭제 2017. 2. 9)
- ② (삭제 2017. 2. 9)
- ③ (삭제 2017. 2. 9)

제14조 (재수강 과목의 신청 및 재수강 횟수) ① 재수강 과목은 동일 과목이어야 하며, 동일과목이 폐지되거나 2개 학기 이상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대체 과목(교과내용 유사 영역과목) 또는 동일인정 과목(과목 명 및 학점 변경 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다.(삭제, 개정 2015. 4. 7, 개정 2017. 8. 28)

② 재수강 과목의 신청은 수강신청 허용학점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며 동일 과목의 재수강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 다만, 필수교과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개정 2015. 4. 7, 개정 2017. 12. 26)

제15조 (과목 폐강) 수강 신청 결과가 아래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을 폐강할 수 있다.(개정 2017. 2. 9)

1. 교양 선택과목 : 수강 인원이 30명 미만인 경우

2. 전공 선택과목 : 해당 학년 수강대상 전공 재학 인원의 30% 미만인 경우
단, 전공 재학인원이 15명 이하인 경우는 8명 미만인 경우 (개정 2013. 3. 1, 개정 2017. 2. 9)
3. 교양 및 전공 필수 교과 중 영역 선택 과목 :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4. 위 각호에 불구하고, 학생의 학력 고취와 원만한 학점 이수를 위하여 학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수책임시수와 강의료 추가 소요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로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13. 3. 1)

제4장 교과 과정 편성 및 이수

제16조 (교과의 구분) ① 교과과정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1)

1. 교양 과정 : 교양필수 교과목, 교양선택 교과목(개정 2016. 12. 29)
2. 전공 과정 : 전공필수 교과목, 전공선택 교과목(개정 2016. 12. 29)
3. 자유(일반) 선택과목 : 전공·부전공·교직·타전공 개설과목, 교양과목 등의 자유로이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 범위를 말하며, 교양 및 전공, 교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교과 구분 표시를 한다.

② 영역필수라 함은 지정한 몇 개의 교과목 중 반드시 한 과목 또는 지정하는 교과목 수만큼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을 말한다.

제17조 (교과 과정의 편성) ① 교과 과정의 편성 및 이수학점은 매 학년도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1)

② 학칙 제26조·제34조에 의하여 이수하여야 할 학과(부) 및 전공별 교과과정과 교과영역별 졸업최소이수학점은 별도 교과과정표로 정한다. (개정 2013. 3. 1)

제18조 (교과과정의 이수) ① 본 세칙 제17조 ②항에서 정한 학과(부) 및 전공의 교과영역별 최소졸업이수학점은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

② 학과 및 전공의 교과영역별 최소졸업이수학점은 입학년도(또는 편입학년도) 이수표를 따르고, 교과과정의 이수는 해당 학년도를 따른다. 단, 교과목의 폐지, 변경으로 인하여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별도 지정하는 대체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동일 명칭의 교과목 또는 유사교과목이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에 각각 개설되었을 경우 해당 전공 학생은 이를 교양과목으로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13. 3. 1)

제19조 (재수강자의 성적) ① 재수강시의 성적은 최고 B+학점까지로 제한한다. 단, 사회봉사활동은 예외로 한다. (삭제, 개정 2015. 4. 7)

② 재수강 시 종전에 취득한 성적은 R(재수강)로 표시하고, F학점은 NA(Not Account)로 표기한 후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않는다.(삭제, 개정 2015. 4. 7)

③ 재수강 과목의 성적 변동으로 해당 학기 성적 평점평균에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삭제, 개정 2015. 4. 7)

- 제20조 (학점의 인정) ① D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은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3. 3. 1)
- ② 성적 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교과목 (의무 이수 교과목)은 P(합격)평가를 이수한 것으로 한다.
- ③ 타 학과(부) 또는 타 전공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 중 소속 학과(부) 및 전공 교과과정에 전공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소속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3. 3. 1)
- ④ 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부전공, 복수전공 과목과 동일할 때는 제 57조에 의거하여 부전공, 복수전공에서 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되 이때의 취득학점수는 이중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3. 3. 1)
- ⑤ 부전공, 복수전공 과목을 이수하였으나 부전공, 복수전공 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해당과목은 자유(일반)선택 과목 영역 이수로 처리한다. (개정 2013. 3. 1)
- ⑥ (개정 2014. 3. 31, 삭제 2015. 4. 7)
- ⑦ (개정 2013. 3. 1, 삭제 2014. 3. 31)
- ⑧ (개정 2013. 3. 1, 삭제 2014. 3. 31)
- ⑨ (삭제 2015. 4. 7)
- ⑩ (삭제 2015. 4. 7)

- 제21조 (학점 교류 및 기타 대체인정에 의한 이수) ① 국·내외 대학, 학과(부)간 협정 체결(사이버 강좌 포함) 및 산·학·연·관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총장이 승인하는 대체학점은 총 32학점(계약학과 45학점 이내)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원격교육 수강 강좌는 신청 학점의 50% 이내로 한다. 단, 계약학과 및 직장인 교육과정 적용자, 8차 학기 이상 수강 대상자,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50%를 초과할 수 있다. 다만, 「교환학생규정」에 따른 파견 교환학생이 교류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제한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6. 12. 29, 개정 2017. 12. 26, 개정 2018. 2. 7, 개정 2019. 2. 11, 개정 2019. 4. 29)
- ② 타 대학 학점 이수 지원 학생은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전 학기 평균 평점이 C(2.0)이상인 학생(단, 사이버 학점교류 학생은 제외)로 학과(부)장의 승인(별지서식 제11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1)
- ③ 학생은 승인 받은 수학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학점인정(별지 서식 제12호)을 교무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
- ④ 인정받은 교과목·학점 및 성적은 본 대학 학점 및 성적과 합산처리 한다.
- ⑤ 학점 교류에 의한 이수 규정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하며, 전항의 내용과 대학 간 협정 내용이 다를 경우 대학 간 협정 내용에 따른다.
- ⑥ 기타 총장이 승인하는 대체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재학 중 16학점 범위 내에서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단, 병역법에 의거 군복무 중인 학생의 복무 중 인정 강좌 이수는 학기당 6학점, 연(年) 12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1. 부속기관 위탁강좌 학점 인정, 연계 자격특강 : 학칙 제27조 1항에서 정하는 학점 당 학습 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직장인 직무관련 교과 학점 인정, 계약학과 산업체 근무경력 학점인정 : 별도 기준에 따른 규

정을 충족하는 경우 (개정 2009. 3. 1, 개정 2009. 10. 20, 개정 2013. 3. 1, 개정 2014. 6. 16, 개정 2017. 2. 9, 개정 2018. 2. 7.)

제5장 시험

제22조 (시험의 종류) 시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학기말 고사 : 매학기 학기말에 평가하는 시험
2. 중간고사 : 각 학과(부)별 교수회의에서 필요로 하여 학기 중간에 평가하는 시험 (개정 2013. 3. 1)
3. 추가시험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게 학과(부)장의 승인과 교과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추가로 실시하는 시험 (개정 2013. 3. 1)
4. 집단 재시험 : 평가 문제의 누출, 고사장 내 부정행위 등에 따라 재평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고사장 전체 학생이 다시 치루는 평가시험 (개정 2017. 2. 9)
5. 학점취득 특별시험 : 학업성취 능력 인정을 정규 수강을 통하여 이루는 것이 아닌 일정한 평가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는 평가시험

제23조 (고사운영) ① 학기말 및 중간고사는 강의시간표에 참조하여 교무처에서 총괄 편성하여 고사 개시 2주일 전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3. 1)

② 시험 감독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감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양 교과를 포함한 감독 시수는 강의 시수와 비례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무처의 승인을 득한 후 감독 교수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7)

③ 고사실은 집단별로 지정하여 고사 기간 중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사좌석은 매 시간 교과목 담당교수가 지정 공고한다. (개정 2015. 12. 7)

④ 시험시간 시작 20분 이후에 퇴실을 허용하며 입실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24조 (추가시험) ① 추가시험은 해당 고사 기간 7일 전·후로 행한다. 단, 교과교수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학기 종강일 전까지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2. 9)

② 추가 시험 대상은 본 세칙 제35조에 해당하는 유고결석 인정 학생에 한하며 이외의 학생은 추가시험에 응할 수 없다. (개정 2013. 3. 1)

③ 추가 시험의 최종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교육실습 대상 학과(유아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한국어교원학과)에 대해서는 최고 학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9. 6. 24)

제25조 (집단 재시험) ① 고사내용 유출, 시험 전·후 벽·책상·걸상 등에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메모 등과 기타 부정행위 사전 준비 및 진행·사후 결과에 대한 해당 학생이 불분명하거나 시험 실시 결과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감독 관계자는 이를 교무처장에게 보고(별지 서식 제13호)하고 교무처장은 이를 확인하여 재시험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7. 2. 9)

② 재시험은 고사 기간내에 시행한다. 단, 고사기간 중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2. 9)

③ 재시험 출제를 의뢰받은 교과담당 교수는 즉시 고사 내용을 달리하는 문제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교무처에서는 재시험 시행공고를 한다. (개정 2013. 3. 1)

제26조 (특별시험) ① 우수학생의 동기부여를 위해 교양 교과목 중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특별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시험에 의한 학점인정은 통산 12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2. 26)

② 특별시험의 시기는 1, 2학기 수업일수 1/4이내 실시하며, 응시원서(별지 서식 제14호)와 수험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사 내용은 정규과목의 학업성취능력을 골고루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어야 하며, 시험 성적의 평점은 절대평가를 적용하되 성적이 79점 이하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3. 3. 1)

④ 해당 교과목에 합격한 학생은 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하며, 성적은 합격한 연도 학기에 입학하고, 그 학점수는 해당학기 수강신청 학점과는 별도로 인정한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7. 6. 26)

⑤ (삭제 2017. 6. 26)

제27조 (시험 부정행위 학생 처리) ① 시험 부정행위 학생은 학생 상벌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는다.

② 부정행위 즉시 퇴실시키고 해당 교과는 F학점 처리를 한다.

③ 감독자는 부정행위 사실을 고사지에 기록·날인한 후 학생복지처에 사실 보고서(별지서식 제15호)를 제출하고,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그 경중에 따라 징계 시작일로부터 근신,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에 처한다. (개정 2013. 3. 1)

④ 감독자의 고사 전 적발 및 고사 태도 불량 학생에 대한 경고 조치도 이를 고사지에 기록·날인하고 교과 담당 교수는 득점의 50%이상 감점을 한다. (개정 2013. 3. 1)

⑤ 부정행위로 인한 유기 정학 학생은 해당 고사 전교과목의 시험을 무효로 하며, 무기정학학생은 해당 학기 전 교과목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13. 3. 1)

⑥ 부정행위로 인한 경고 학생은 학과(부)교수회에서, 근신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교내 봉사 활동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징계 등급을 한 단계 높여 처리한다. (개정 2013. 3. 1)

제6장 성적 및 학사 경고

제28조 (성적 평가) ① 학업 성적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석차누적비율 분포(동점 학생 일 경우만 동일 등급 내 비율 초과를 평가정원의 20% 내에서 허용)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3. 3. 1)

1. 전공 및 교양 교과 (개정 2013. 3. 1, 개정 2017. 5. 1, 개정 2019. 8. 26)

등급	분포율
A+ ~ A	0 ~ 30%
A+ ~ B	0 ~ 65%
C+ ~ F	35% 이상

(단, 출석미달이 아닌 경우에 F학점 인원은 30% 이내로 제한함)

2. (개정 2013. 3. 1, 개정 2017. 5. 1, 삭제 2019. 8. 26)

3. 상대평가 집단은 학급 편성을 한 수강인원을 평가 단위로 한다. 다만, 동일교과는 성적평가의 엄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합반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7. 5. 1)

② 전항의 학점 평가 분포 제한에도 불구하고 교직과정 및 사범계학과 전공교과, 실험/실습/실기 과목(단, 이론 병행강좌 제외), 학점 교류 및 사이버 강좌, 10명 이하의 강좌, 군사학과목, 계약학과 과목, 교내외 위탁교육 및 협약에 의한 개설교과, 총장이 승인하는 별도의 평가기준이 지정된 강좌는 100점 득점표에 의한 절대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3. 1, 개정 2014. 3. 31, 개정 2016. 12. 29, 개정 2017. 2. 9, 개정 2017. 5. 1)

A+ : 95 ~ 100점 / A : 90 ~ 94점

B+ : 85 ~ 89점 / B : 80 ~ 84점

C+ : 75 ~ 79점 / C : 70 ~ 74점

D+ : 65 ~ 69점 / D : 64 ~ 60점

F : 60점 미만 및 출석 미달 학생

③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P(합격) 또는 N(불합격)로 표시하고, D이상과 P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3. 3. 1, 개정 2015. 8. 31)

④ 외국인 학생 및 기타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학생은 석차누적비율과 관계없이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5. 4. 7)

제29조 (평가 기준 및 방법) ① 학업성적은 학칙 제31조 ①항에 의거하여 종합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과목은 예외로 한다.

1. 출석점수는 20%~40%를 반영하며 점수부여는 출석부 점수 조건표를 따른다.

2. 평소 학습 성적 및 과제 또는 시험 성적 반영 비율은 학기 초 교과교수가 정한 바를 따른다.

② 성적평가 방법 등에 관한 변경 사항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 12. 7)

③ 교수 자녀 수강시 최종 성적부여 기준은 아래와 같다. (신설 2019. 2. 11)

1. 교원의 해당 자녀 입학시 교무처로 신고함은 물론 부모과목 수강시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9. 2. 11)

2. 출석·과제제출·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부)장에게 제출하고, 학과(부)장은 관련내용을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5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2. 11)

3. 상기 사항을 미준수하였을 경우에는 총장에게 보고 후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신설 2019. 2. 11)

제30조 (성적 평가표 작성 및 처리) ① 교과 담당교수는 학기말 시험 종료 수 7일 이내에 성적평가표 및 출석부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5. 12. 7)

제31조 (평점의 계산) ① 학업 성적의 평점 평균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 합계를 총 학점수로 나누어 산출하되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그 미만은 버린다.

② 성적 순위의 동점 학생은 평점의 합계 · 학점의 합계 순위로 처리하되 이도 같을 때는 동순위 학생으로 한다.

③ 등급에 따른 평점과 이 평점에 의하여 전체 취득성적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백분위 점수로 다시 환산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하며, 등급 간에는 비례 적용을 한다. (신설 2013. 3. 1, 개정 2014. 3. 31, 개정 2015. 4. 7, 개정 2015. 8. 31)

등급	A+	A	B+	B	C+	C	D+	D	F	P	N	R	NA
평점	4.5	4.0	3.5	3.0	2.5	2.0	1.5	1.0	없음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점수	98	93	88	83	78	73	68	63	없음	통과	미이수	재수강	미이수

제32조 (휴학생 및 특기자 운동부의 성적 처리) ① 수업일수 3/4이상을 경과하고 군입대 또는 장기입원 치료로 휴학한 학생의 잔여 평가 점수는 이전의 학습기간 중에 취득한 중간고사, 평소 학습 성적, 과제등에서 취득한 점수에 비례하도록 부여하고 출석 점수는 잔여기간을 출석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② 앞의 제①항 이외 사유로 일반 휴학을 하는 경우는 수업일수 3/4이전에는 수강신청 전 과목을 취소한 것으로 하며, 3/4이후에는 휴학 이전에 취득한 점수만으로 평가한다.

③ 전항에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해당 학기 전교과 성적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때의 등록금도 무효로 처리한다.

④ 중간고사 이후 수업일수 3/4선 이전에 군입대하는 학생이 해당학기 성적인정과 수료를 희망하는 경우 출석은 휴학일로부터 수업일수 3/4일까지 인정하지 아니하며 나머지는 제①항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특기자 대학지정 운동부 및 기타 학점 대체 인정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 (유고결시인정 학생의 성적 처리) ① 입원, 입대, 병무소집, 기타 총장이 정기시험 불참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시험불참원(별지 서식 제18호)을 제출하여 해당교과 담당교수에게 유고결시를 인정받은 학생은 본 세칙 제24조에 따라 추가시험을 실시하되, 대학의 사정에 따라 실시하지 않거나 본인의 유고 결석사유의 계속으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단, 교육실습 대상 학과(유아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한국어교원학과)는 교직실습여건을 감안하여 시험불참원 제출을 의무로 하지 않고 추가 시험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1, 개정 2017. 8. 28, 개정 2019. 6. 24)

1. 중간고사 미참 학생 : 기말고사 자기 득점의 100% 반영
2. 기말고사 미참 학생 : 중간고사 자기 득점의 100% 반영
3. 중간·기말고사 미참 학생 : 추가 시험 응시

②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모두 유고결시한 학생의 최종 성적은 B+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1)

제34조 (재수강학생의 성적처리) 재수강의 성적은 재수강 이수학기에 성적을 부여한다.(삭제 2013. 3. 1, 개정 2014. 3. 31, 개정 2015. 4. 7)

제35조 (출석) ① 학칙 제30조 ②항에 의거하여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1/4을 초과하여 결석(유고결석포함)한 학생은 해당 과목 성적을 F로 처리한다. 다만, 계약학과 등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7. 2. 9, 개정 2017. 8. 28)

② 교무처에서는 필요 시 교과별 2주 이상 결석 학생을 파악하여 학과(부)에 통보하고 지도교수를 통해 출석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7. 2. 9, 개정 2017. 8. 28)

③ 대리출석 등 부정출석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생은 결석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7. 8. 28)

④ 지각 3회는 결석 1시간으로 간주하며, 수업시작 20분 이후 출석하는 학생은 결석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6. 12. 29)

⑤ 유고결석 인정(공결 포함)은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를 경유한 유고결석(공결) 인정 요구서(별지 서식 제19호)를 교무처에 해당학기 종강 전까지 제출, 승인을 받아야 출석으로 간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6. 12. 29, 개정 2017. 2. 9, 개정 2017. 8. 28)

유 고 결 석 인 정 사 유	인 정 일 수
1. 본인 결혼	7일 이내
2. 직계 존비속(조부모, 부모, 처부모, 자녀) 및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5일 이내
3. 부모회갑일, 방계친족(백숙부, 형제자매)의 결혼	2일 이내
4. 민법 777조 친족 범위의 사망	3일 이내
5. 예비군 훈련,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1일+교통소요시간
6. 본인의 입원 및 치료	3주 이내
7.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의한 총장 승인 건	수업일수 1/4 범위 내 실제 소요일수
8. 국가자격증 및 공무원 시험의 응시, 본교를 대표한 출전	수업일수 1/4 범위 내 실제 소요일수
9. 교육실습, 학술답사, 탐방활동 등 학과(부)장이 요청한 건	수업일수 1/4 범위 내 실제 소요일수
10. 교무처장이 학습과 관련한 사항으로 승인한 경우	수업일수 1/4 범위 내 실제 소요일수
11. 기타 직장인 교과과정 적용자의 교육훈련, 출장 등 교무처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업일수 1/4 범위 내 실제 소요일수

⑥ 군제대 학생의 전역일이 수업일수 1/4일 이내에 이루어져 복학하였을 때 전역일 이전의 기간과 복학 준비기간 5일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일반 휴학 학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7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 조기 취업을 한 경우에는 학과장이 승인한 취업확인서(별지 서식 1호)를 산학취업처장에게 제출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결 및 성적 처리를 한다. (개정 2016. 12. 29)

1. 중간고사 이전에 조기 취업을 할 때의 출결 및 성적 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6. 12. 29)

가. 과제물 1건을 2주 이내의 출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6. 12. 29)

나. 1회 이상의 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 또는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평가하며,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고 교과교수가 인정 한 경우는 시험대체 과제물로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성적은 B0이하로 제한한다. (신설 2016. 12. 29)

2. 중간고사 이후 조기 취업을 할 때의 출결 및 성적 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6. 12. 29)

가. 과제물 1건을 2주 이내의 출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6. 12. 29)

나. 기말고사는 중간고사의 100% 비례 인정 또는 별도의 시험 등으로 성적을 평가한다. (신설 2016. 12. 29)

3. 조기 취업을 승인한 학과장은 승인 후 1주일 이내에 조기 취업자가 수강하는 교과교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며, 조기취업을 확인한 산학취업처장은 매 학기말 조기 취업자 명단을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6. 12. 29)

⑧ 사범계학과(한국어교원학과 포함) 및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실습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7. 5. 1)

1. 과제물 1건을 2주 이내의 출석으로 인정하며, 교육실습으로 인해 중간 또는 기말고사에 불참 시 제33조의 규정에 따른다.

2. 교육실습을 실시하는 학과장은 실습 시행 7일전까지 교육실습 명단을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

제36조 (성적 열람 및 이의 신청) ① 학생은 기말고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자신의 성적을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7. 8. 28)

② 성적에 대한 이의 신청은 성적열람 기간에 허용하고, 교과교수는 즉시 관계 사항을 확인하여 이의 신청이 인정될 경우 성적을 정정해 줄 수 있으며, 성적이관 후 성적에 대한 정정 신청은 별도로 지정하는 기간에 교과교수가 증빙자료를 첨부한 성적 정정원(별지 서식 제21호)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정정승인을 요청한다. (개정 2017. 8. 28)

제37조 (사회봉사활동의 평가) ① 사회봉사활동의 평가 방법은 학칙 제31조 ②항 100점 득점표에 의한 절대평가이며 평가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 (현장실습 또는 실무연수의 평가) ① 전공 관련 현장 실습 또는 실무 연수는 4주 이상의 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학·연·관 협력을 통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경우 현장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다.

③ 평가방법 및 영역은 별도로 정한다.

제39조 (학사경고 및 유급) ① 학칙 제33조에 의거하여 평균 평점 1.75미만 학생은 매 학기말에 학사경고를 하되, 졸업학기의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7. 8. 28)

- ② 교무처는 학사 경고를 받은 학생에게 학사경고 통지문(별지 서식 제23호)을 보내고, 지도교수는 특별 지도를 하여야 하며, 학생은 교수학습센터 학습역량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미참여자의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본 세칙 제9조에 제시된 수강신청 최소 학점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5. 12. 7, 개정 2017. 8. 28)
- ③ 재학 중 통산 4회 이상 또는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대상이 되며, 제적여부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7. 8. 28)
- ④ 학과 지도교수는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의 학업능력을 고려하여 수강학점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8)
- ⑤ 유급은 자진유급의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학사경고에 의한 제적대상 학생이 해당학기 수업일수 1/4 이내에 유급원을 제출하여 승인된 경우 제적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6)
- ⑥ 유급한 학생의 성적 중 유급학년(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한다. 다만, 외부평가 과목은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4. 7)

제7장 계절학기

제40조 (개설 과목) 계절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교과과정표에 있는 과목 중에서 교무처에서 지정하거나 교과교수의 개설 요청에 따라 개설하되,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이하일 경우는 폐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제41조 (수강 대상) 계절학기 수강 대상 학생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1)

1. 복수 전공 · 부전공 · 조기졸업 희망 학생 (개정 2013. 3. 1)
2. 교과목의 재이수 또는 재수강이 필요한 학생 (개정 2013. 3. 1)
3. 정규 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을 미리 이수하기 위한 학생 (개정 2013. 3. 1)

제42조 (수강 신청 및 취소) ① 소정의 신청 기간 중에 별도로 책정되는 수강료와 함께 신청서 (별지서식 제24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취소는 수업개시일 전일까지로 하며 이에 대한 납입금은 반환한다.

제43조 (수업 기간) 하계 또는 동계 방학 중 6주 이내로 실시하며 학점 당 수업시수는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44조 (취득학점 및 성적) ① 계절학기당 6학점까지 허용하며 성적 평가 방법은 정규학과와 같다.

② 계절학기 취득성적은 정규 학기 성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별도로 처리한다.

③ 졸업최종학기에 취득한 계절학기 학점은 당해학기 졸업사정 학점에 반영한다. (개정 2019. 8. 26)

제45조 (수강료) ① 수강료는 학점 단위로 한다.

- ② 타 대학과의 학점 교류에 의한 수강료는 개설 대학의 기준에 따른다.
- ③ 특별히 지정되는 교과목(스키, 수영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험·실습 등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장 전공 배정

제46조 (배정의 기준) ① 학생의 진로·적성·흥미에 객관적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 전공 배정의 경우, 특정 전공의 편중과 기피로 인한 학사 운영의 문제점이 표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최소 및 최대 전공 배정 정원 기준을 따른다.

1. 전공별 배정 기준 : 학부 정원(재학생 수)을 전공수로 나눈 평균 배정 인원(M)의 2분의 1이 하이거나 1배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학부장이 조정(단, 전공 배정인원이 15명 이하일 경우 전공개설을 아니 할 수도 있다.)
2. 앞의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전공별 전공 관련 교과 성적, 학기 평균 평점 순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에 불구하고 총장은 매 학년도의 교육 여건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학부 성격에 따라 전공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 (배정의 시기) ① 학부장은 매 학년도 말 진급 학년 수강 신청 기간 이전에 배정을 완료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수강 신청 지도를 한다.

② 전공 변경은 예비 졸업 사정 이전 1회에 한하여 학기말에 허용할 수 있으며 배정정원 의 여석 범위 내에서 학부장이 시행하고 그 절차는 본 세칙 제52조에 준한다.

③ 사전 전공 배정을 하지 아니하는 학부는 6차 학기까지의 전공과목 이수 여부에 따라 전공 배정 또는 전공 인정을 심의 확정하되 제46조 ①항의 1, 2호를 따르지 아니한다.

제47조의2 (유연학기제) ① 학칙 제9조에 의하여 지정된 수업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1. 유연학기제
2. 집중강의제
3. 기타 국가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른 형태

② 유연학기제 등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6.]

제48조 (전공의 변경 및 확정) ① 전공 배정 후 변경은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등록 마감 후 허용한다.

② 졸업에 필요한 교과영역별 최소 이수 학점 적용 및 학위 전공 표시 확정은 예비졸업 사정회에서 결정하며 본인이 지정 희망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7차 학기 초에 제출하는 전공 표시 신청서(별지 서식 제25호)에 기재된 전공 명에 대한 승인내용을 따른다.

제9장 전과(부) (개정 2013. 3. 1)

제49조 (범위) 전과(부)는 대학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해당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총장이 허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사범계학과로의 전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보건계학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4. 3. 31, 개정 2014. 7. 23)

제50조 (시기) ① 2학년 또는 3학년 진급 시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다만, 3학년 편입생의 경우 1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매 학년도 제1학기 등록 마감 후 교무처장은 전부가 가능한 학과(부)를 공고한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5. 8. 31)

②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조기복학 학생의 전과(부)는 진급하는 학기 단위로 하되, 잔여학기가 4개학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 3. 1)

③ 학과(부) 내 전공배정은 전공배정 평균인원(M)의 30%이내로 한다. (개정 2013. 3. 1)

제51조 (자격 및 교과이수) ① 학칙 제33조에 의한 학사 경고 2회 이상, 편입생은 1회 이상인 학생과 학칙 제48조에 의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은 전과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사범 및 보건계학과로의 전과는 평균평점이 3.5이상인 학생 중 성적순으로 허용하되 면접은 합격과 불합격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단, 학부·학과(전공) 명칭의 변경 또는 통합된 신규 학부·학과(전공)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학부·학과(전공) 명칭을 정정할 수 있으며, 전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4. 6. 16, 개정 2015. 12. 7, 개정 2017. 2. 9)

② 전과(부)한 학생은 학과(부)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3. 3. 1)

제52조 (절차) ① 전과(부)를 희망하는 학생은 지정기간 내에 전과(부) 희망 원서(별지 서식 제26호)와 이전 학년의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지도 교수 및 학과(부)장, 전입 희망 학과(부)의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3. 1)

② 전과(부)의 승인을 받은 학생은 등록금 차액을 결산하고, 수강 신청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

③ 전과(부) 허용 인원보다 지원 학생이 많을 때는 이전 학년의 평균 평점, 관련 교과 성적 순위에 따라 허가하며 필요시 별도의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제53조 (교과 이수) 전과(부)를 승인 받은 학생은 전입학과(부)의 교과 과정에 따르되 동일한 교과목은 이수를 인정하며 잔여 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

제10장 복수전공 (제2전공)

제54조 (정의) 학칙 제29조 ②항에 의거하여 당초 입학한 학과(부) 전공과정(제1전공)을 이수하면서 동시에 본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전 학과(부) 및 전공을 대상으로 제2전공의 학업을 수행하여 두

개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개정 2013. 3. 1)

제55조 (자격) ① 복수전공 희망 학생은 각 전공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7. 12. 26)

② 사범계학과로의 복수전공 신청 학생은 사범계학과생 및 교직이수 학생으로 하고, 보건계학과로의 복수전공은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3. 3. 1)

③ 편입생은 복수전공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56조 (절차) ① 복수전공 희망 학생은 1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매 학년도 말(졸업예정학기 제외) 소정기간 내에 복수전공 이수신청서(별지 서식 제27호)를 각 전공 학과(부)에 제출하여 각 전공 학과(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무처에 제출한다.(단, 사범계학과 및 교직과정으로의 복수전공 희망 학생은 2학년 1학기 소정기간 내에 복수전공 이수신청서 제출) (개정 2009. 6. 1, 개정 2013. 3. 1, 개정 2017. 12. 26)

② 전항의 기간 내에 복수 전공 이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학생은 복수 전공과목을 이수하더라도 복수 학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복수전공 이수 예정자가 이수중인 복수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수전공 포기신청서(별지 서식 제28호)를 각 전공 학과(부)에 제출하여 각 전공 학과(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무처에 제출한다. (신설 2017. 12. 26)

제57조 (교과 이수) ① 복수 전공 학생은 제2전공에서 지정하는 전공 필수 교과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학부 영역필수는 해당 전공 교과만을 이수한다. 교양과목의 경우 해당 전공에서 별도로 지정할 때에는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

② 제2전공 선택 교과는 제2전공에서 지정하는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되, 복수전공에 필요한 선택 과목의 이수학점 중에서 지정 과목의 총학점이 반드시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③ 현장 실습 또는 실무연수는, 제1전공에서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제2전공에서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④ 부전공 과정을 거치거나 제1전공 과정에서 복수전공 과목을 자유(일반)선택으로 이수한 경우에도 모두 복수전공 과목에 해당할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⑤ 제1전공과 제2전공 개설 교과가 동일한 경우는 제 20조에 의거 복수전공에서 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되 6학점까지로 한정하며, 이때의 취득 학점수는 이중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는다.(신설 2013. 3. 1, 개정 2014. 3. 31)

제58조 (복수 전공 인정) ① 복수전공 학생의 일반학과(부) 제2전공 최소 졸업(이수)인정 학점은 33 학점 이상으로 하고, 사범계학과는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 개정 2013. 3. 1, 개정 2019. 2. 11)

② 사범계학과 및 교직과정으로의 복수전공인정은 「교직과정 이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 12. 26)

- ③ 복수전공은 제1전공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④ 복수전공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부전공 자격에 해당할 경우 부전공을 인정할 수 있다.
- ⑤ 복수전공 이수 사정은 복수전공 학과(부)에서 시행한다. (개정 2013. 3. 1)

제59조 (수업연한) 복수 전공 학생의 수업연한은 제1전공을 포함하여 학칙 제6조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못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전공과 제2전공 수학 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한다.

제60조 (실습비 징수) 제2전공 교과로만 편성되어 있는 3학년 1학기 이후 과목의 실험·실습·실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장 부전공

제61조 (자격) ① 부전공 신청자는 부전공 개설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6. 1, 개정 2013. 3. 1, 개정 2015. 4. 7, 개정 2019. 2. 11)

- ② 사범계학과 및 보건계학과로의 부전공은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6. 1)
- ③ 부전공은 학문의 영역이 유사하거나 인접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공에 대하여 학과(부)장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개설한다. (개정 2013. 3. 1)

제62조 (절차) 본 세칙 56조 복수전공 절차에 준한다. (별지 서식 제29호, 제30호) (개정 2017. 12. 26)

제63조 (교과 이수 및 인정) ① 부전공 개설 학과(부) 전공에서 지정하는 교과목을 반드시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0, 개정 2013. 3. 1, 개정 2019. 2. 11)

- ② 부전공을 인정받지 못하였을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 ③ 실험·실습·실기를 요하는 전공과목에 대한 실험실습비는 복수전공에 준한다.
- ④ 제1전공과 부전공의 개설 교과가 동일한 경우 부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중복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무시험검정 국가자격취득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정한 과목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3. 3. 1)

제63조의2 (부전공 의무이수) ① 융합전공 설치·운영 학과(부)에서는 필수적으로 융합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② 부전공 의무이수 대상자는 제61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③ 재정지원사업 등에 의해서 설치되는 융합전공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부)는 부전공의무이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부전공 의무이수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6.]

제12장 휴학 및 복학

제64조 (휴학의 사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휴학을 할 수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휴학 : 질병, 가정사정, 자녀양육, 임신·출산 등 기타 개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개정 2017. 2. 9)
2. 군 입대 휴학 : 입영 명령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의 휴학
3. 창업 휴학 : 창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산학취업처장이 승인한 휴학 (신설 2014. 3. 31)

제65조 (휴학의 제한) 입학(편입학 포함) 후 1학기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학생은 휴학할 수 없다. 다만, 1개월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질병, 군 입대, 가정형편 곤란 학생 및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휴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7. 2. 9)

제66조 (휴학의 절차) 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별지 서식 제31호)를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1)

1. 질병의 사유 : 병원 발행 진단서 (개정 2017. 2. 9)
2. 군 입대의 사유 : 입영명령서(영장) 사본 및 원본 (대조 후 반납)
3. 창업의 사유 : 창업계획서 및 산학취업처 승인 확인서 (신설 2014. 3. 31)
4. 기타의 사유 : 증빙자료 및 보호자 사유서(항변경 2014. 3. 31)
5. 자녀양육으로 휴학할 경우 만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9)

② 일반 휴학 중인 학생이 군 입대 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휴학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군 입대 휴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3. 3. 1)

제67조 (휴학 기간) ① 휴학기간은 1년을 1회 단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과이수에 지장이 없는 학생에 한하여 한 학기 간을 휴학기간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② 휴학은 재학 중 통산 4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 입대 휴학과 창업 휴학 기간은 산업하지 아니하며, 1개학기 이상의 가료가 필요한 질병 휴학과 총장이 승인한 유학·연수·훈련·자녀양육·임신·출산 등의 경우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휴학기간과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14. 3. 31, 개정 2017. 2. 9, 개정 2017. 5. 1)

③ 휴학 연장을 하고자 할 때는 휴학기간 만료 이전에 반드시 휴학 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 (휴학생의 성적 및 등록 인정) 휴학생의 성적 및 등록 인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본 세칙 제6조와 제32조에 의한다.

수업일수 \ 구 분	군 입 대 휴 학		일 반 휴 학	
	성 적	등 록	성 적	등 록
3분의 1 당해일까지의 휴학원	무 효	유 효	무 효	유 효
3분의 1 다음날부터의 휴학원	무 효	유 효	무 효	무 효
4분의 3 당해일까지의 휴학원	무 효	유 효	무 효	무 효
4분의 3 다음날부터의 휴학원	유효(이수)	중 결	유효(이수)	중 결

- 제69조 (복학) ① 휴학 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 수업일수 1/4 이내에 복학원(별지 서식 제32호)을 교무처에 제출하고 등록과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
- ② 학기개시 후 1/4이후에 제대하여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출석일수를 확보 할 수 있는 군휴학 학생의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 복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3. 1, 개정 2017. 2. 9)
- ③ 1년의 휴학 기간 중 한 학기 만에 그 사유가 해소되어 복학을 하고자 할 경우 교과과정 이수 에 지장이 없는 학과(부) 및 전공에 대하여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복학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 ④ 군제대의 경우 학기 단위로 앞의 제③항에 준하여 복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13장 편입학 · 학사편입학 · 재입학

- 제70조 (편입학) ① 편입학은 별도로 산정하는 해당 학과(부)의 여석 범위 내에서 매학기 초에 허용 한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8. 2. 28)
- ② 편입학 학생 선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 3. 1)
- ③ 편입학 학생의 학점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 3. 1)
- 제71조 (학사 편입학) ① 학사 학위를 가진 학생은 학칙 제18조 ②항에 의거하여 학사 편입학을 3학 년 매학기 초에 허용한다. (개정 2013. 3. 1)
- ② 학사 편입학의 선발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③ 본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학사 편입학을 할 경우 입학금을 면제한다.
- 제72조 (재입학) ① 학칙 제21조에 의거하여 본 대학을 자퇴하였거나 제적된 학생은 원적 학과(부) (전공)의 동일 학년, 학기로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폐과 등의 사유로 원적 학과(부)(전 공)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한 경우와 재입학 학년, 학기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전형위원회의 결 정에 따른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7. 2. 9, 개정 2017. 6. 26)
- ② 재입학의 절차는 재입학원 제출 - 심사 - 재입학 허가 - 등록(당해 학년의 등록금 및 입학금 포함)의 순으로 하며, 심사는 전형위원회에서 다룬다.

제73조 (제한) ① 편입학 · 학사편입학 · 재입학 학생이 징계 사실이 있을 때는 불허 또는 허가를 취

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② 본 대학 편입학 전형에 응시하여 면접 점수로 인한 불합격 학생은 재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제14장 제적 및 퇴학

제74조 (제적) ① 본 대학교의 학적을 취득한 사람이 졸업 또는 퇴학 이외에 학칙 제25조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해당 학생을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② 제적일자는 사유 발생 최종 확인 일자로 한다. (개정 2015. 8. 31)

③ 제적처리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교무처장은 해당 학과(부)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제적된 사람의 본인이나 보호자(보증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

제74조의 2(졸업유예) ① (신설 2014. 3. 31, 삭제 2018. 2. 7)

② (신설 2014. 3. 31, 삭제 2018. 2. 7)

제75조 (퇴학) 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명기한 자퇴원(별지 서식 제33호)을 지도교수 및 소속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3. 1)

② 퇴학의 처리일자는 출원일자로 한다.

제15장 졸업 및 조기졸업

제76조 (졸업요건) ① 졸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학칙 제34조 ②항을 충족한 학생으로서 졸업사정에 통과되어야 졸업증서(별지 서식 제2호)를 수여한다. (개정 2013. 3. 1)

② 학점은행체에 의한 학위수여 학생은 본 대학에서 8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

③ 전 교과목 평균평점은 1.75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2019. 2. 11.)

제77조 (졸업논문 및 졸업발표) ① 졸업논문 및 졸업에 필요한 실기 발표 및 졸업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 졸업논문 및 졸업발표 등에 불합격한 학생은 2년 이내 2회에 한하여 논문 등을 재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③ 졸업논문 및 졸업발표 등에 합격한 학생이 다른 졸업 요건에 미달했을 경우에 이의 유효기간은 1년간으로 인정하되, 질병·군 입대의 사유 해당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1)

④ 졸업논문 및 발표 작품의 원본은 소속 학과(부)에서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

⑤ 졸업인증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7. 8. 28)

제78조 (조기 졸업) ①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은 학칙 제34조 ②항을 충족한 학생으로서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1)

1. 전체학년의 평균평점이 4.00이상인 학생 중 공인검정기관의 일정 이상의 어학능력을 갖춘 학생. (인문사회계열-토익 800점 이상, 이공계열-토익 700점이상) (개정 2013. 3. 1)
- ② 졸업규정에서 정하는 졸업실적물에 대한 심사는 총장이 별도로 3인이상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전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3. 3. 1)
 1. 학칙 제48조 ①항, ②항에 의한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2. 학칙 제23조 ①항 중 질병·병역의무를 제외한 사유로 휴학한 사실이 있는 학생
 3. 학칙 제18조에 의하여 편입한 학생 (개정 2013. 3. 1)
 4. 학칙 제21조에 의하여 재입학한 학생 (개정 2013. 3. 1)
 5. F학점을 취득한 학생 또는 성적포기원을 제출하여 성적을 포기한 학생 (개정 2013. 3. 1)
 6. 조기졸업 최종학기에 특별시험, 학점교류, 학점 대체인정, 계절학기로 학점을 취득한 학생 (개정 2013. 3. 1)
 7. 조기졸업 최종학기에 학기 중 3/4이상의 실질 수업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 (개정 2013. 3. 1)
- ④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5학기를 이수한 후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학기 수업일수 1/4 이내에 소속 학과(부)장의 추천서 및 조기 졸업사정 신청서(별지 서식 제34호)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기졸업 신청자격은 신청 시 신청이전 학기까지의 총 평균평점이 4.0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7. 6. 26)

제79조 (졸업 사정) ① 졸업 사정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실시한다.

1. 예비 졸업 사정 : 해당 학과(부)장이 주관하며 7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에 전공표시 신청서 심의, 전공 승인 및 졸업 요건 충족 여부를 학생이 책임 진단하고 이에 대하여 지도교수는 이상 유무를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
 2. 졸업 사정 : 8학기 종료일(2월말 또는 8월말을 말한다.) 1개월 전 까지 졸업승인 및 우수 졸업생을 확정한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6. 2. 4)
- ② (개정 2013. 3. 1, 삭제 2017. 8. 28)

제79조의 2 (졸업유예) ① 졸업요건이 충족되어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학연한 이내의 범위 안에서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8. 2. 7)

② 졸업유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2. 7)

제16장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및 제증명 발급

제80조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학적부(별지 서식 제1호)의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학적부에 착오로 기재된 성명, 생년월일 등의 인적 사항
2.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된 성명, 생년월일 등이 기록된 호적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여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81조 (제증명 발급) ① 본 대학교에 적이 있는 학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1)

1. 재학증명서 :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 (별지 서식 제36호) (개정 2013. 3. 1)
2. 제적증명서 : 본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 (별지 서식 제37호)
3. 졸업증명서 : 학위를 취득하여 졸업한 사람 (별지 서식 제38호)
4. 졸업예정증명서 :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최종 학기 등록을 필하고 취득 가능학점이 학칙 제34조 제2항 1호에 따른 졸업최소이수학점 이상인 학생 (별지 서식 제39호) (개정 2013. 3. 1, 개정 2014. 3. 31, 개정 2017. 2. 9)
5. 수료증명서 : 학칙 제35조에 따라 수료를 인정하는 사람 (별지 서식 제40호) (개정 2013. 3. 1)
6. 성적증명서 : 수료한 성적이 있는 사람 (별지 서식 제41호) (개정 2013. 3. 1)
7. 휴학증명서 : 현재 휴학하고 있는 사람(별지 서식 제42호) (개정 2013. 3. 1)
8. 기타 학생증, 학적부 사본 등 확인 증명

② 증명서 발급은 fax민원·민원우편·인터넷증명발급·직접발급에 의한다. (개정 2017. 2. 9)

③ 모든 증명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발급 받을 수 있다.

④ 제증명은 발급자의 확인인이 있어야 유효하며, 발급자는 발급대장에 기재 비치해야 한다. 제증명서의 발급은 앞의 ①항 8호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장 명의로 한다. (개정 2009. 10. 20)

제17장 세칙 개정 및 보칙

제82조 (세칙 개정) 본 세칙 개정은 교무처장 또는 교수회에서 발의하고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3. 3. 1)

제83조 (보칙) 본 세칙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의 세부내용 및 학사 행정처리 방법은 해당 규정과 학사행정 요강으로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6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0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제20조 6항은 2014학년도 1학기 이수교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4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제14조 제2항의 재수강 횟수 제한은 2015학년도 1학기 이수교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5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제28조(성적 평가) 및 제35조(출석)의 개정 사항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개정 당시 취업중인 학생은 이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8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